가상자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콘텐츠에서는 코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도부터, 예치금 · 가상자산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위반 시 제재, 가상자산소득 · 상속 · 증여에 따른 세금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속 · 증여 시 세금 신고까지 국민이 실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1
1. 가상자산의 이해 4
1.1. 가상자산 알아보기 4
1.1.1. 가상자산 등의 개념 4
1.1.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7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11
2.1.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의 보관 11
2.1.1. 예치금 보호 11
2.1.2. 가상자산의 보관 13
2.2. 보험 가입 및 거래기록의 관리 14
2.2.1. 보험 가입 등 및 거래기록의 보존 14
3.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17
3.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7
3.1.1.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17
3.2.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규제 19
3.2.1.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19
3.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등 21
3.3.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21
3.3.2.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24
3.4.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 및 신고 25
3.4.1.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신고 25

1. 가상자산의 이해

1.1. 가상자산 알아보기

1.1.1. 가상자산 등의 개념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코인과 토큰은 어떻게 다른가요?

코인과 토큰은 모두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주)를 가지고 있는 반면, 토큰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없이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 코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바이낸스 코인(BNB), 도지코인(DOGE) 등

- 토큰: 이더리움의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니스왑(UNI), 시바이누(SHIB), 샌드(SAND) 등이 대표적이며, ERC-20 토큰은 ERC-20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됨

주) “블록체인 네트워크”란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33페이지 참조>.

※ 국내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

①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②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③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금융위, ‘23.2.6)

*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가상자산”임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4페이지 참조>.

※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디지털자산 등은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 가상자산을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9.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10.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함)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11.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다만,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함)
12.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Q1. NFT(대체 불가능 토큰)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NFT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NFT로 바꾸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미술품·영상·음악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소유권·자격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라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가상자산과 같이 거래·교환되거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NFT를 여러 개로 나누어 거래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

- NFT 자체의 고유한 가치보다 가격 상승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즉, 겉으로는 NFT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거래된다면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참조>

이용자의 개념

"이용자"란?

▪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함)·교환·이전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관·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가상자산사업자"란?

▪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① 매매,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6. 8. 13.) 1~3페이지 참조].

가상자산사업자 종류	내용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 •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결성한 자율협의체입니다. 법령상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가상자산의 상장·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여부를 공동으로 심사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실상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 참조>

Q. 가상자산거래를 반복하면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1.1.2.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신고의무

▪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제4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5항).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함)
   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다만,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함)
   ② 해당 법인의 대표자
3.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다음의 사항
   ①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함)
   ③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④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⑥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⑦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①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⑧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
   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불수리요건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참조).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함)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은 자(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1호·제2호의3·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함)

4.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함)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제7항에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자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② 최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하는 자만 해당함)

Q.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심사항목을 충족하면 ´예비인증´을 통해 우선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인증(본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참조).

변경신고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제5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6항).

구분	변경사항	변경신고 기한
1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고

▪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상자산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

▪ 갱신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2항).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2026.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제한 및 미신고 영업에 대한 제재

신고·변경신고의 직권말소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수리 이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제2항·제3항).

1. 가상자산사업자의 불수리요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③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미신고 영업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국외 사업자 포함)는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국내법상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6. 24.),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자산의 보호

2.1.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의 보관

2.1.1. 예치금 보호

예치금의 보호

예치금의 분리보관 및 관리기관에의 예치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함. 이하 같음)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다음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리기관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3조제2항).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①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③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등)
3. 가상자산사업자가 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②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예치금이용료 지급

▪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

> Q.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나요?
>
> A.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이 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7. 17.),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참조].

예치금의 보호 강화

예치금의 상계·압류 금지 등

▪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지 못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그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 예치금 상계·압류 등 금지의 예외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6조).
>
>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 3.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 4.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예치금의 우선지급

▪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이때 지급액은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그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 관리기관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한 후,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본문).

▹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단서).

Q.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면 제가 맡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예치금은 관리기관(은행)에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예치·신탁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3호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1. 21.),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위반 시 제재

▪ 예치금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1.2. 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등

이용자명부의 작성·비치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함)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

▹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가상자산의 위탁보관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다음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①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④ 위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것

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것

②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위반 시 제재

▪ 가상자산의 분리·위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2. 보험 가입 및 거래기록의 관리

2.2.1. 보험 가입 등 및 거래기록의 보존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보험의 가입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다음의 보험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험사고의 범위>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함)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②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고

▪ 보험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

1.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위 1. 및 2.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위 1. 또는 2.의 조치만으로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위반 시 제재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및 보존기간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함)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 보존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①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②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③ 가상자산거래의 일시·종류·수량 및 금액

④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함)인 경우만 해당함]

⑤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위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록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2. 위 1.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위반 시 제재

▪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3.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1.1.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주주,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Q.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해도 되나요?**
>
>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요주주, 계약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참조).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함
>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
> ①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
> ②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함)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
> 6.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가장·통정매매 등 금지

▪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통정매매)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통정매매)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등 금지

▪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Q. 시세조종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경주마, 가두리 등 시장 특유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경주마: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
- 가두리: 특정 거래소에서 일부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수법
- 대형고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며 매매하는 투자자를 가리키며, 이러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음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7. 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참조>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거래유형을 분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예방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수사기관 고발 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3. 18.),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붙임2 참조].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

부정한 거래행위 금지

▪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금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예외적 허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절차와 방법(지체 없이 공시 및 제출 등)을 따르는 경우

> ※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규제

3.2.1.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상거래의 범위

▪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의심 시 통보·신고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금지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단서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제1항).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에게는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정당한 사유”란?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자금세탁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리기관 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함)

⑥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⑦ 가상자산사업자가 직권말소,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함)

2.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3.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등

3.3.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징금 부과대상 및 금액

▪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형사처벌과의 조정

▪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위반행위 유형별 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1.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2.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가장매매 등의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거래행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된 징역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위반 시 처벌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된 징역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익 또는 손실액의 계산방법
>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며, 부당이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자격정지 등 병과

▪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를 위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몰수·추징 및 양벌규정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또는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위반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Q.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
> A. 네,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고 실제 거래에서 대가로 사용된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3.3.2.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으로 영업을 중단할 때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거래한도·가상자산의 거래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
9.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과태료 부과

▪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 법인인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이 아닌 경우: 6천만원 이하(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3.4.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 및 신고

3.4.1.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신고

가상자산 관련 주요 사기 유형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저가 매수 기회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8. 3.),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1. 비상장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투자 권유 후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재단이 상장 전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상장 후 재단 관련자들 대량 매도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례
3.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한 사례
4.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도록 하여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례
5.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허위광고로 투자를 권유한 뒤 자금을 편취한 사례

※ 그 밖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형 및 피해 사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금융감독원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또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제보할 수 있습니다(출처: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참조).

▹ 다만,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일반 투자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 및 조치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속한 수사 진행을 원하거나 피해구제가 필요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